

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

2022. 4.



- ❖ 이 FAQ는 '22.1.20.~'22.3.31. 기간동안 지방관서 및 운영기관의 문의사항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- ❖ 그 외 개별적인 문의 중 전체 운영기관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FAQ를 업데이트하여 추가 송부할 계획입니다.

**기업 요건 (지침 II)**

- Q> 기준 피보험자 수는 지원 한도를 정할 때만 적용되나요? ..1
- Q>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? ..... 1
- Q> 인력공급업 등의 업체에서 본사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, 기준 피보험자 산정시,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자를 모두 포함하는지? 아니면 사업장의 직접 고용인원만 포함하는지? ..... 1
- Q> 인위적 감원 발생 후, 재참여할 때 적용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 ..... 1
- Q>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나요? ..... 2
- Q> 사업지침(P.10)상 특수학교, 대안학교도 지원제외 대상인지? .. 2
- Q> 고용보험상 건설업본사(41999) 코드를 가지고 있는, 전문건설업체의 성장유망업종 적용 여부 ..... 2
- Q> 청년창업기업 판단 시 중간에 대표(청년 아닌 자로)가 바뀐 경우에도 청년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? ..... 2
- Q> 기업이 공동대표일 때 공동대표가 모두 청년이어야 청년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? ..... 3
- Q> 사업지침(P.9)상 소비향락업 등 지원제외 업종이 부업종인 경우 지원제외되어야 하는지? ..... 3
- Q> 사업 양도양수(개인→법인 전환) 시 지원한도 산정은 어떻게? ..... 3
- Q>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던 사업장이, 새로운 사업장으로 인수합병된 경우로 기존 지원대상자는 지원이 가능한지? ..4

**청년 요건 (지침 Ⅲ-2, 3)**

- Q> 지원대상 청년이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하나요?  
..... 6
- Q>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상용직과 같은  
근로형태(주기적, 장기간)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 상태라고  
보고 6개월 이상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하나요? ..... 6
- Q>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  
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나요? ..... 6
- Q>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? ..... 6
- Q>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 
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 
가능한지? ..... 7
- Q>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이후  
취업한 청년이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국취에 지속참여(재개)한  
경우,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면 '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'  
으로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? ..... 7
- Q>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서,  
최종학교에 방통대, 사이버대, 대학원도 포함되나요? ..... 8
- Q>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
요건에서, 가입기간이 정확히 12개월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  
청년에서 제외되나요? ..... 8
- Q>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 
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? ..... 9
- Q>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되는 청년의 경우, 청년의 자격요건을  
확인하는 기준 시점이 '계약직 채용일'인가요, '정규직 전환일'  
인가요? ..... 9

## 순 서

Q> '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하고 있는 자'는 취업 중인자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(지침 p.12)되는데, 계약직 근로자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지원대상에 포함됨. 이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?  
..... 10

Q> 방통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등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지원이 가능한데, 이 때 최종학력은 직전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? ..... 11

Q> 일학습병행제 기업 훈련지원금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시 차감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?  
..... 11

Q>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청년이 휴업은 하지 않았으나,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, 증빙자료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? ..... 11

Q>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판단 시 대학재학기간 중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산입하여야 하는지? ..... 12

Q> 주간 대학생이 실제 수업을 야간에 듣는다면, 야간대학생으로 볼 수 있는지? ..... 12

Q> 군필자에 대한 청년의 나이 연장은 사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?  
..... 12

Q>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은?  
..... 12

### 채용 요건 (지침 Ⅲ-3)

Q>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, 도약장려금 사업도 협약 체결일 이후 채용기한에 제한이 있나요? ..... 13

## 순 서

- Q>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과 실제 채용인원이 달라도 괜찮나요?  
..... 13
- Q> 지난해('21년)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올해('22년) 정규직으로  
전환된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? ..... 13
- Q> '22년에 채용한 청년은 어떤 의미인가요? ..... 14
- Q> 현장실습생 중 '21년 기준으로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 
경우에도 실습생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한지? 21년도 취업자로  
보아 지원제외 대상인지? ..... 14
- Q> “3개월 종료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”에서 즉시 전환의 의미는  
무엇인가요? ..... 14
- Q> 사업 참여 신청 시점과 채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?  
..... 15
- Q> 지원대상 청년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, 잔여 개월에  
대해 다른 청년을 대체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? ... 17
- Q>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, 인위적 감원에  
해당하나요? ..... 17
- Q> 1회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회차 지원금 지급 전 인위적 감원이  
발생한 경우,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 ..... 17
- Q>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 재참여가 6개월간 제한됨.  
이 경우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인위적 감원 발생 후 6개월이  
지난 시점에 사업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 ..... 18
- Q> 재택근무로 채용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 이 경우 별도의  
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? ..... 18
- Q>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도중 다른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 
(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관련) 기간이 발생한 경우 지원은? 18

## 순 서

Q> 5인 미만 특례업종으로 참여신청한 사업장이 지원기간 중 다른 업종(특례업종 미해당)으로 변경시 지원은? ..... 19

Q> 지원기간 중 소비향락 등 지원제외 업종으로 업종변경 시 지원은? ..... 19

### 지원 내용 (지침 IV)

Q>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되는데, 기간제 근로자로 주 20시간 근로 후 정규직 전환 후 주 30시간이 된다면 지원 가능한지? ..... 20

Q>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입대, 육아휴직 등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되는 기간의 도약장려금 지원은? ..... 20

Q> 사업참여기업이 규모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대규모 기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? ..... 20

### 지원 절차 (지침 V)

Q> 기업이 자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? ..... 21

Q> 본사와 지사가 나누어져 있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..... 21

Q> 동일한 사업주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업을 두 개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 ..... 22

### 운영기관 목록 및 연락처

..... 23

## 기업 요건 (지침 II)

Q> 기준 피보험자 수는 지원 한도를 정할 때만 적용되나요?

- 기준 피보험자 수는 기업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(5인 이상 기업 여부) 및 지원 한도를 판단할 때 활용됨

Q>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?

- 다른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채용된 청년이라 하더라도, 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모두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됨

Q> 인력공급업 등의 업체에서 본사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, 기준 피보험자 산정시,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자를 모두 포함하는지? 아니면 사업장의 직접 고용인원만 포함하는지?

- 직접고용 여부를 가리지 않고, 해당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모두 기준 피보험자 수에 포함함

Q> 인위적 감원 발생 후, 재참여할 때 적용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-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재참여하는 경우, 재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기준 피보험자 수 및 지원 한도 등을 새롭게 산정함

\* 해당 기업의 최초 참여 신청 시점의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적용되지 않음



**Q>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나요?**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「고용보험법령」상 우선지원대상기업\*이면 지원 가능함

\* 구체적 요건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 확인

**Q> 사업지침(p.10) 상 특수학교, 대안학교도 지원제외 대상인지?**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되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특수학교, 대안학교는 지원제외 기업에 해당함

**Q> 고용보험상 건설업본사(41999) 코드를 가지고 있는, 전문 건설업체의 성장유망업종 적용 여부**

\* 건설업은 특성상 2개의 사업장관리번호(1개는 일반 사업장관리번호(끝자리 0), 1개는 '일괄' 사업장관리번호(끝자리 6))를 부여받으며, 일반 사업장의 업종코드는 건설업본사(41999, 성장유망업종 아님)로 고정됨. '일괄'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전문건설업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

- '일괄' 사업장의 전문건설업 업종코드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며, 지자체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았고, 동 사업장이 실제로 해당 업종을 수행한다면 이를 성장유망업종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함

**Q> 청년창업기업 판단 시 중간에 대표(청년 아닌 자로)가 바뀐 경우에도 청년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?**

- 사업 지침(p.7)의 청년 창업기업 지원요건에 따라, ①청년(만15~39세)이 창업, ②도약장려금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(만15~39세), ③ 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인 기업이면 지원 가능함

Q> 기업이 공동대표일 때 공동대표가 모두 청년이어야 청년창업 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?

- 공동대표 중 1인이더라도 사업 지침(p.7)의 청년 창업기업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보아 지원 가능함

Q> 사업지침(p.9)상 소비향락업 등 지원제외 업종이 부업종인 경우 지원제외되어야 하는지?

- 주업종, 부업종을 가리지 않고 소비향락업 등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Q> 사업 양도양수(개인→법인 전환)시 지원한도 산정은 어떻게?

- 개인사업자(A)에서 법인사업자(B)로 사업양도양수를 통해 사업의 모든 인적·물적 자원 및 법률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, 이는 기업의 외형적 형식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
- 따라서 B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산정할 때, A의 사업이력을 포함하여 “기준 피보험자 수”를 산정하여야 함

Q>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던 사업장이, 새로운 사업장으로 인수 합병된 경우로 기존 지원대상자는 지원이 가능한지?

〈새로운 사업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〉

< 예시 >

1.20. 기존 사업주(장) A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

1.26. 기존 사업주(장) A 청년근로자 홍길동을 정규직으로 채용

5.1. 기존 사업주(장) A가 새로운 사업주(장) B에 인수합병됨

\* 사업장 A, B, 청년근로자 홍길동은 모두 지원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함

□ 인수합병한 새 사업장(B)이 합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,

○ 기존 사업장(A)의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협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기 채용자(홍길동)에 대해 1.26.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

\* 이 때, 지원한도는 새 사업장(B)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

\*\* 청년 홍길동의 채용일과 사업장 B의 참여신청일은 3개월이 지나도 무방함

□ 인수합병한 새 사업장(B)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거나, 합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

○ 기존 사업장(A)의 참여협약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이 신청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청년근로자 홍길동은 관련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자 (사업지침 p.11, 2-9)로 보아 지원이 불가함

## 〈새로운 사업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에 기 참여중인 경우〉

### < 예시 >

- 1.20. 사업주(장) A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
- 1.26. 사업주(장) A 청년근로자 임꺽정을 정규직으로 채용
- 2. 1. 사업주(장) C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
- 5. 1. 사업주(장) A가 사업주(장) C에 인수합병됨
- \* 사업장 A, C, 청년근로자 임꺽정은 모두 지원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함

별도 사업신청 없이, 인수합병한 사업장(C)의 기존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○ 사업장(C)의 기존 참여협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적용하되, 청년 근로자 임꺽정은 예외적으로 소속이 변경된(A→C) 것으로 보아 1.26.부터 지원 가능

\* 청년 임꺽정의 채용일과 사업장 C의 참여신청일은 3개월이 지나도 무방함

**청년 요건 (지침 Ⅲ-2, 3)**

**Q> 지원대상 청년이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하나요?**

워크넷 구직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

**Q>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상용직과 같은 근로형태(주기적, 장기간)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상태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하나요?**

이 경우에도 실업상태로 보고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됨

\* 일용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필요성을 고려

**Q>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나요?**

현장실습 기업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'22.1.1.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, 도약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됨

**Q>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?**

채용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(지침 p.18 참조), 휴학생도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대학 재학 중인 자로 판단함

\*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, 방송통신대·사이버대·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

Q>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?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“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,
  - 예외적으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
- 따라서,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,
  -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,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

Q>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이후 취업한 청년이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국취에 지속 참여(재개)\*한 경우,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면 ‘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’으로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?

\* 국취 참여 중 취업하여 1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청년이 국취에 지속참여(재개)하는 경우,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‘일용근로’로 간주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(실업상태)으로 보는 것과 관련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’ 요건으로 참여하려면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이후 ‘최초’ 취업한 경우여야 하며,
  -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최초 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
- \*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지속참여(재개)를 하게되면 기존 취업을 취소되어 최초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나(국취 자체 운영기준), 도약장려금은 이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속참여(재개)를 하더라도 기존 취업을 최초 취업으로 봄에 유의

Q>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서, 최종학교에 방통대, 사이버대, 대학원도 포함되나요?

□ 방송통신대·사이버대·대학원도 최종학교에 포함됨

○ 청년이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으로 참여하는 경우, 위 학교를 졸업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대상 청년에 포함됨

□ 아울러, 방송통신대·사이버대·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'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(지침 p.18 참조)'에 해당하는데,

\*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, 방송통신대·사이버대·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

○ 이는 '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보가입 기간 12개월 미만' 요건이 아닌,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(6개월 이상 실업, 국취 참여 등)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임

Q>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요건에서, 가입기간이 정확히 12개월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 청년에서 제외되나요?

□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(365일,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 366일) '미만'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, 12개월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Q>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?

- '22.1.1.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의 경우, 다른 지원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- 방위산업체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의 경우, 계약직 채용일이 '22.1.1. 이후이고 계약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(지침 p.19 참조), 다른 지원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원 가능

Q>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되는 청년의 경우, 청년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시점이 '계약직 채용일'인가요, '정규직 전환일'인가요?

- 청년의 자격요건 확인일은 “계약직 채용일”임
- 따라서, 계약직으로 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“6개월 연속 실업상태인 청년”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함



Q> '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하고 있는 자'는 취업 증인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(지침 p.12)되는데, 계약직 근로자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지원대상에 포함됨. 이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?

□ '취업 증인 자로 보는 경우(지침 p.12)'에 기재된 '채용일'이란 '정규직 채용일'을 의미하며,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○ 즉, 청년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직전 3개월 이내에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다면 '취업 증인 자'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임

\* 계약직으로 근로하던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(지침 p.19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요건을 적용)

□ 동일 사업주의 청년 재고용은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한 청년에 대해 제한함(지침 p.11)에도 불구하고, 계약직·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직전 3개월 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Q> 방통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\* 등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지원이 가능한데, 이 때 최종학력은 직전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?

\*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,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침 수정 예정

□ 방통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, 일학습병행 참여자 등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나(사업지침 p.18), 이 경우에도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만족하여야 함

○ 단, 해당 청년들은 채용일 현재 '재학 중인 자'로서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, 특례①(고졸 이하 학력), 특례⑦(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기간 1년 미만) 요건으로는 참여가 불가함

\* 단,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(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특례7,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특례1 적용 가능)

Q> 일학습병행제 기업 훈련지원금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시 차감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?

- 일학습병행제 기업에 대한 훈련지원금은 학습기업의 계속훈련을 지원하고,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책으로 그 성격은 인건비 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

Q>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청년이 휴업은 하지 않았으나,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, 증빙자료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?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채용일 현재, 「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, 취업증인자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
  - 단,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로 보고 있음
- 이 경우 채용일 기준 직전 1년의 기간에 대한 소득증명원을 통해 소득이 0원일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
  - \*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매년 5월)과 채용일 간의 시차로 인해, 채용일 기준 직전 1년간 소득이 없었던 청년이 추후 동일 기간에 소득 발생 및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음(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)

Q>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 판단 시 대학 재학기간 중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산입하여야 하는지?

- 특례⑦ 요건 판단 시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만 산정하며, 재학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입하지 않음

Q> 주간대학생이 실제 수업을 야간에 듣는다면, 야간대학생으로 볼 수 있는지?

- 수업의 진행방식에 따라 주간대학생, 야간대학생을 구분하는 것은 아님
  - 따라서, 주간대학의 재학생이 학과의 수업을 사이버 또는 야간에 수강한다하여 사이버대학생 또는 야간대학생이 되는 것은 아님

Q> 군필자에 대한 청년의 나이연장은 사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?

-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청년의 나이 연장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뿐만 아니라, 군인사법 제7조(의무복무기간)에 따른 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함

Q>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은?

-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은 취업애로청년 판단기준 “특례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” 요건을 적용하면 됨

### 채용 요건 (지침 Ⅲ-3)

Q>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, 도약장려금 사업도 협약체결일 이후 채용기한에 제한이 있나요?

□ '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협약 체결 후 '22.12.31.까지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이 가능함

Q>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과 실제 채용인원이 달라도 괜찮나요?

□ 기업이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채용계획대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

□ 기업이 채용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지원은 기업별 지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, 운영기관은 이 내용을 참여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

□ 기업이 채용계획보다 더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기업과 협의하여 채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음

○ 다만, 운영기관이 임의로 채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업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임

Q> 지난해('21년)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올해('22년)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?

□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'22년 중에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함

\* '21.12.29.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'22.1.14.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지원대상 청년에 해당되지 않음

Q> '22년에 채용한 청년은 어떤 의미인가요?

- 기업이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, '22.1.1.부터 '22.12.31.까지 채용해야 함을 의미함
- 기업이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,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 모두 '22.1.1.부터 '22.12.31.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

\* '22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'23년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(이 경우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)된 경우에 대해서는 '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예정임

Q> 현장실습생 중 '21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습생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한지? '21년도 취업자로 보아 지원제외 대상인지?

-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'22년에 신규로 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, '21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Q> “3개월 종료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”에서 즉시 전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

- '22.1.1.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(3개월 종료 즉시 전환된 경우 포함)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
- 이때 “즉시 전환”의 의미는 ‘기간제’와 ‘정규직’ 사이에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함을 의미하며,
  -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경우,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\* '22.3.9.~'22.6.8. 기간제 신분으로 근로하고, '22.6.10.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,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**Q> 사업 참여 신청 시점과 채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?**

※ 청년 채용 및 참여신청 관련 내용(지침 p.19~20)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

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·승인 이후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임

□ 이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은 다음의 경우가 있음

**① 사업참여 신청·승인 후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**

☞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함(단, '22.12.31.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)

\* '22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'23년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(이 경우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)된 경우에 대해서는 '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예정임

**②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**

☞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 가능함(단, 22.1.1이후 채용)

**③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**

☞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\*할 경우 지원 가능함(단, 22.1.1.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고, '22.12.31.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\*\*)

\* 이 경우 정규직 전환 시기는 사업 참여 신청 전(前)일 수도 있고 후(後)일 수도 있음

\*\* '22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'23년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(이 경우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)된 경우에 대해서는 '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예정임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년의 최초 채용 시점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 참여 신청 전  | 사업 참여 신청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청년의 최초<br>채용 형태 | 정규직 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<br>채용 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능 (원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기간제 채용<br>→<br>정규직 전환<br>(3개월 내) | 기간제 채용이 참여 신청<br>직전 3개월 이내 이루어지면<br>가능<br>(채용 및 전환 모두 '22년 내) | 기간제 채용 및 정규직<br>전환 모두 '22년 내에<br>이루어지면 가능 |

**(예) △△기업에서 '22.4.10.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청년 A~K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**

\* 기업 및 채용된 청년이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'21.12.17 | A 기간제 채용             | (A) '21년에 기간제 채용 → 지원대상×  |
| '21.12.23 | B 정규직 채용             | (B) '21년에 정규직 채용 → 지원대상×  |
| '22.1.5   | C 정규직 채용             | (C) '22년에 정규직 채용되었으나, 참여 신청 직전 3개월보다 이전에 채용 → 지원대상×             |
| '22.1.11  | <b>참여 신청 3개월 전</b>   | (D)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 → 지원대상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22.1.12  | D 정규직 채용<br>E 기간제 채용 | (E)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에 기간제로 채용되어,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○   |
| '22.3.16  | A 정규직 전환             | (F)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에 기간제로 채용되어,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○   |
| '22.3.30  | F 기간제 채용<br>G 기간제 채용 |   |
| '22.4.5   | E 정규직 전환             | (G)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에 기간제로 채용되었으나, 이로부터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× |
| '22.4.10  | <b>참여 신청</b>         | (H) 참여 신청 후 정규직 채용 → 지원대상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22.5.11  | H 정규직 채용<br>I 기간제 채용 | (I) 참여 신청 후 기간제로 채용하여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○                  |
| '22.6.29  | F 정규직 전환             | (J) 참여 신청 후 정규직 채용 → 지원대상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22.7.1   | G 정규직 전환             | (K) 참여 신청 후 기간제로 채용되었으나 '2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×                  |
| '22.8.10  | I 정규직 전환             | * 단, '23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여부는 '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예정                     |
| '22.12.29 | J 정규직 채용<br>K 기간제 채용 |   |
| '23.1.28  | K 정규직 전환             |   |



Q> 지원대상 청년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, 잔여 개월에 대해 다른 청년을 대체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□ 기업이 특정 청년에 대해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 청년이 12개월 지원기간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,

○ 기업이 다른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음

\*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, 기업의 지원한도에서도 차감

□ 단, 청년이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 하는 등 기타의 사유로 1회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,

○ 해당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으며, 새롭게 채용된 청년으로 12개월 지원이 가능함

Q>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,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나요?

□ 자발적 퇴사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음

Q> 1회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회차 지원금 지급 전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,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
□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날부터 지원이 중단되며,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

**Q>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 재참여가 6개월간 제한됨. 이 경우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인위적 감원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**

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에서 재참여 제한 기간(6개월) 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
\* 재참여 신청 이후에도 해당 청년에 대해 지원 불가

○ 만약 재참여 제한기간 동안 채용된 청년에 대해 사후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할 경우, 인위적 감원 후 6개월 재참여 제한 규정이 무력화되기 때문임

다만, “기준 피보험자 수” 산정 시 해당 청년은 포함될 수 있음

\* (예) '22.1.20. 참여 신청한 기업에서 '22.3.15.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, 6개월이 지난 '22.9.15.부터 재참여 신청이 가능함. 이 때, '22.9.15.부터 직전 3개월 이내 (예컨대 '22.8.7)에 청년을 채용하여 재참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함 → '22.9.15. 사업 재참여 시 '기준 피보험자 수' 산정에는 포함됨

**Q> 재택근무로 채용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 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?**

청년이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하며, 근태 관리 및 근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

**Q>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도중 다른 사유로 지원금 지급 제한(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관련) 기간이 발생한 경우 지원은?**

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
\* (예) A사업장에서 청년 甲을 '22.1.1. 채용하고, 甲은 '22.12.31.까지 정상근로함. A사업장이 다른 사유로 '22.6.1.~8.31.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, 청년 甲에 대해서는 1회차 지원금('22.1.1.~5.31.), 2회차 지원금('22.9.1~10.31.), 3회차 지원금('22.11.1~12.31.) 지급 가능 <'22.6.1.~8.31 기간에 대한 지원금 부지급>

Q> 5인 미만 특례업종으로 참여신청한 사업장이 지원기간 중 다른 업종(특례업종 미해당)으로 변경시 지원은?

기 채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기간 보장

Q> 지원기간 중 소비향락 등 지원제외 업종으로 업종변경 시 지원은?

업종변경 시점부터 지원불가함

## 지원 내용 (지침 IV)

Q>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되는데, 기간제 근로자로 주20시간 근로 후 정규직 전환 후 주 30시간이 된다면 지원 가능한지?

□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은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  
이므로, 정규직 기간 동안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기간제 근로시의  
근로조건과 무관히 지원받을 수 있음

\* 단, 해당 청년의 취업애로청년 여부는 계약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함

Q>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입대, 육아휴직 등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되는 기간의 도약장려금 지원은?

- 근로자의 개인사유(휴직, 군입대 등)로 인해 사업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,
- 청년을 채용하고 직후 1년간의 기간 동안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면 됨

### < 예시 >

22.1.1. 입사, 월 임금 190만원

22.4.1.~22.6.15.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

22.7.15. 개인사정 퇴사

→ 1회차 지원금은 '22.1.1~3.1.(매월 80만원), 6.16.~6.30.(일할계산)에 대해서 지급하며, 근로하지 않은 '22.4.1~6.15.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

2회차 지원금은 '22.7.1~7.14.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

Q> 사업참여기업이 규모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?

□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기간(유예기간 포함) 중에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지원기간을 보장하며,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

## 지원 절차 (지침 V)

Q> 기업이 자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
할 수 없음

- 기업은 자기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만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

Q> 본사와 지사가 나누어져 있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은 “사업”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함

※ '동일한 사업'임에도 본사·지사 등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참여신청 방법

- ① 동일한 사업주가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하나의 사업이라면 관련사업장으로 묶어서 신청해야 함(전산 반영)
- ②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본사 정보로 참여신청을 하고,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사 정보에 관해 운영기관에 별도 통보하여야 함 → 운영기관은 기 승인된 본사 참여신청서에 기업이 통보한 지사 사업장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

다만, 하나의 사업이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무관리 및 회계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(지사) 단위로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

**Q> 동일한 사업주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업을 두 개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**

- 비록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, 각 사업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
- 다만, 동일한 청년에 대해 동일한 사업주의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사업에서 도약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

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
| (본사) A : 사업주 甲 |
| (지사) A-1       |
| (지사) A-2       |
| (지사) A-3       |

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
| (본사) B : 사업주 甲 |
| (지사) B-1       |
| (지사) B-2       |
|                |

-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업 A와 B가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일 경우 甲은 A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과 B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게 각각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
  - A, A-1, A-2, A-3가 하나의 사업이므로 A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. 다만, A, A-1, A-2, A-3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, 노무관리 및 회계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A, A-1, A-2, A-3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이 각각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 (B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)
  - A에서 채용되어 A-2에서 일하던 청년(乙)을 대상을 A가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고, 乙이 퇴사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B에 채용되어 B가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규정에 위반되어 지원이 제한됨
  - A-1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청년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A-3에서 근무하는 경우는, '동일 사업' 내에서 근무하는 사업장만 변경된 것이므로 다른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
  - A-1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청년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B-2에서 근무하는 경우는, A와 B는 사업주만 다를 뿐 서로 '다른 사업'이므로,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규정에 위반되어 지원이 제한됨
- \* A(A-1, A-2, A-3 포함), B(B-1, B-2 포함) 모두 지원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함

| 관할고용센터명  |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관할지역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고용센터   | (주)메이크인             | 02-2291-7070  |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     |
| 서울고용센터   | (주)잡모아동대문지점         | 02-2273-8886  |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     |
| 서울고용센터   | (사)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  | 02-2230-2123  |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     |
| 서울고용센터   | 인크루트알바콜(주)          | 02-2186-9059  |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     |
| 서울고용센터   | 스텝스(주)              | 02-2178-8079  |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     |
| 서울고용센터   | (사)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| 070-4048-6709 |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     |
| 서울고용센터   | (주)한국직업개발원 중부지사     | 02-6336-0546  |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     |
| 서초고용센터   | (주)제니엘              | 02-580-0192~4 | 서초구                |
| 서초고용센터   | (사)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    | 02-6949-3930  | 서초구                |
| 서초고용센터   |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        | 02-6929-0011  | 서초구                |
| 서초고용센터   | (주)스카우트 서초지사        | 02-2188-6805  | 서초구                |
| 서초고용센터   | (주)지에스씨넷 서울지점       | 02-1811-8652  | 서초구               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(주)맥시머스             | 070-8633-6949 | 강남구               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인지어스(유)             | 02-2188-2038  | 강남구               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(사)한국고용복지센터 서울강남점   | 070-4269-2617 | 강남구               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커리어넷 서울강남지사         | 02-6953-6532  | 강남구               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(주)이음길에이치알 강남지사     | 02-6229-2274  | 강남구               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(주)프로뱅크             | 02-6925-1397  | 강남구               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(주)티이에스             | 02-2088-8757  | 강남구               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(주)유니에스 강남센터        | 02-6011-1447  | 강남구               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(주)스카우트             | 02-2188-6729  | 강남구                |
| 서울동부고용센터 | (주)한국직업개발원          | 070-4373-5021 | 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 |
| 서울동부고용센터 |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         | 02-475-0110   | 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 |
| 서울동부고용센터 | (주)제이엠커리어 서울숲센터     | 02-2284-0077  | 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 |
| 서울동부고용센터 | (주)스카우트 동부지사        | 02-6457-1180  | 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 |
| 서울동부고용센터 | (주)코리아잡스원 서울지점      | 070-4204-1279 | 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 |
| 서울동부고용센터 | (주)잡모아 천호지점(분사무소)   | 1599-0190     | 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 |
| 서울동부고용센터 | (사)한국취업능력개발원        | 02-3409-8217  | 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 |
| 서울동부고용센터 | (주)대신기술능력개발원취업센터    | 02-486-5353   | 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 |
| 서울동부고용센터 | (주)유니에스 동부센터        | 02-6011-1471  | 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 |

| 관할고용센터명  | 운영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| 관할지역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서부고용센터 | (주)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    | 070-4613-4896  | 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        |
| 서울서부고용센터 | (주)유니에스 서부센터      | 02-6011-1326   | 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        |
| 서울서부고용센터 | (사)한국평생교육협회       | 02-6378-3100   | 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        |
| 서울서부고용센터 | 케이잡스(주)           | 02-798-8575    | 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        |
| 서울서부고용센터 | 워크트랜드(주)          | 02-6091-0072   | 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        |
| 서울서부고용센터 | (주)잡모아 서부지점       | 02-332-8380    | 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        |
| 서울남부고용센터 | (주)제이엠커리어         | 070-4613-4820  | 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             |
| 서울남부고용센터 | (주)잡모아            | 02-2602-6566   | 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             |
| 서울남부고용센터 | (주)아이피시           | 070-4801-3865  | 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             |
| 서울남부고용센터 | (주)티이에스 남부센터      | 02-2637-2923   | 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             |
| 서울남부고용센터 | (주)제이앤비컨설팅        | 02-2098-1059   | 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             |
| 서울남부고용센터 | (사)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   | 02-2658-0958   | 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             |
| 서울북부고용센터 | (주)잡모아 북부지점       | 02-991-7743    | 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, 강북구, 성북구    |
| 서울북부고용센터 | 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센터 | 070-4837-4527  | 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, 강북구, 성북구    |
| 서울북부고용센터 | 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    | 02-6925-5875~6 | 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, 강북구, 성북구    |
| 서울관악고용센터 |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서울지점  | 02-889-7502    |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         |
| 서울관악고용센터 | (사)한국고용협회         | 02-6952-5763   |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         |
| 서울관악고용센터 | 케이잡스 구로지사         | 02-6959-1069   |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         |
| 서울관악고용센터 | (사)한국취업능력개발원      | 02-6951-1712   |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         |
| 서울관악고용센터 | (사)벤처기업협회         | 02-6331-7043   |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         |
| 서울관악고용센터 | (주)커리어넷           | 02-2006-9534   |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         |
| 서울관악고용센터 | (주)잡모아 관악지점       | 02-878-0045    |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         |
| 인천고용센터   | (사)인천벤처기업협회       | 032-817-2900   | 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 |
| 인천고용센터   | (주)채움에이치알디 송도지사   | 032-225-3139   | 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 |
| 인천고용센터   | (주)이노스잡           | 032-421-5202   | 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 |



| 관할고용센터명  | 운영기관명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관할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인천고용센터   | (주)제니엘 인천지점      | 032-710-8790  | 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              |
| 인천고용센터   | (주)미래서비스         | 032-216-0061  | 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              |
| 인천고용센터   | (주)잡모아 인천남부지점    | 1599-0190     | 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              |
| 인천고용센터   | (사)인천경영자총협회      | 032-428-8050  | 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              |
| 인천고용센터   | (주)휴먼잡트러스트       | 070-4257-8839 | 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              |
| 인천북부고용센터 | (주)휴먼잡트러스트 계양지점  | 032-543-5717  | 인천시 부평구·계양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천북부고용센터 | (주)맥시머스 부평지점     | 032-710-4018  | 인천시 부평구·계양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천서부고용센터 | (주)잡모아 인천서부지점    | 032-563-2265  | 인천시 서구·강화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천고용센터   | (주)잡모아 부천지점      | 032-322-8669  | 부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천고용센터   | 케이잡스(주) 부천지사     | 032-351-9957  | 부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천고용센터   | (주)이노스잡 부천지점     | 032-325-3301  | 부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김포고용센터   | (주)미래고용정보        | 031-984-9001  | 김포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김포고용센터   | (주)명은커리어 김포센터    | 031-926-3190  | 김포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정부고용센터  | (주)미래고용정보 대진대사무소 | 031-539-1068  | 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 |
| 의정부고용센터  | (주)제이엠커리어 의정부지사  | 031-928-5675  | 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 |
| 의정부고용센터  | (주)명은커리어 북부지사    | 031-928-6226  | 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 |
| 의정부고용센터  | 스텝스(주) 의정부센터     | 031-879-5161  | 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 |
| 의정부고용센터  | 케이잡스(주) 남양주시사    | 070-7719-5591 | 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 |
| 의정부고용센터  | (주)잡모아 의정부지점     | 031-872-5558  | 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 |
| 고양고용센터   | (주)명은커리어         | 031-926-3422  | 고양시·파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양고용센터   | (주)조인스잡 고양지사     | 031-926-3154  | 고양시·파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양고용센터   | (주)지에스씨넷 파주지점    | 031-948-1480  | 고양시·파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양고용센터   |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고양지사 | 031-963-8968  | 고양시·파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 | (주)잡모아 수원지점      | 031-271-6404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 | (사)한국고용협회 수원지사   | 031-546-8970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 | (주)채움에이치알디 수원지사  | 031-546-3548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 | (주)스카우트 수원지사     | 031-211-2416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관할고용센터명 | 운영기관명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| 관할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원고용센터  | (사)경기경영자총협회      | 031-8014-5499 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| (사)이엘티에스연구원 화성지사 | 031-292-8092  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| 용인상공회의소          | 031-332-9812  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| 화성상공회의소          | 031-350-7971  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| (사)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 | 031-8064-1086 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| (사)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  | 031-213-5524  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|
| 수원고용센터  | (주)명은커리어 경기지사    | 031-895-6265    |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                 |
| 성남고용센터  | (주)잡모아 성남지점      | 031-744-8886 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성남고용센터  | 스텝스(주) 성남센터      | 031-759-0993 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성남고용센터  | (주)굿잡            | 031-698-3347 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성남고용센터  | (주)제니엘 성남지사      | 031-778-8818 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성남고용센터  | (주)제이엠커리어 분당지사   | 031-8023-9102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성남고용센터  | (주)메이커인 성남지사     | 031-778-6299 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성남고용센터  | (주)지오코칭 성남지사     | 02-2275-2557 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성남고용센터  | (사)한국바이오협회       | 031-628-0024 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성남고용센터  |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  | 031-628-9660 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성남고용센터  | 광주하남상공회의소        | 031-761-9090    | 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 |
| 안양고용센터  | (주)잡모아 안양지점      | 031-464-8885    | 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        |
| 안양고용센터  | (주)잡모아 광명지점      | 02-2686-1112    | 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        |
| 안양고용센터  |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양   | 031-468-8212    | 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        |
| 안양고용센터  | 안양과천상공회의소        | 031-447-9170    | 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        |
| 안산고용센터  | (주)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  | 070-5165-6033~4 | 안산시, 시흥시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산고용센터  | 시흥상공회의소          | 031-501-5700    | 안산시, 시흥시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산고용센터  | (주)제이오비 시흥       | 031-319-9297    | 안산시, 시흥시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산고용센터  |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산   | 031-487-9113    | 안산시, 시흥시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택고용센터  | (주)코리아잡스원 (평택)   | 070-4411-9211   |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                  |
| 평택고용센터  | (주)리부트코리아안성센터    | 031-8053-9691   |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                  |
| 평택고용센터  | (주)조인스잡          | 031-647-6995    |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                  |
| 평택고용센터  | 오산상공회의소          | 031-373-7441    |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                  |

| 관할고용센터명  |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| 관할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춘천고용센터   |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                  | 033-256-8828   | 춘천시, 홍천군, 양구군, 화천군, 인제군, 가평군(경기도)      |
| 춘천고용센터   |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강원지회              | 033-262-2097   | 춘천시, 홍천군, 양구군, 화천군, 인제군, 가평군(경기도)      |
| 춘천고용센터   | 케이잡스 춘천지사                      | 033-264-0134   | 춘천시, 홍천군, 양구군, 화천군, 인제군, 가평군(경기도)      |
| 강릉고용센터   | 강릉상공회의소                        | 033-643-4411   | 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양양군, 고성군                |
| 강릉고용센터   | (주)맥시머스                        | 070-7543-2062  | 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양양군, 고성군                |
| 원주고용센터   |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원주센터              | 033-813-0013   | 원주시, 횡성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주고용센터   | 원주상공회의소                        | 033-743-2991~4 | 원주시, 횡성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주고용센터   | (사)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                 | 033-743-1541   | 원주시, 횡성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태백고용센터   |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(강릉)              | 033-641-8819   | 태백시, 삼척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영월고용센터   | 원주상공회의소 (영월)                   | 033-743-2991~4 |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고용센터   | (주)커리어넷 부산지사                   | 051-803-7037   | 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 |
| 부산고용센터   | 부산상공회의소                        | 051-990-7088   | 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 |
| 부산고용센터   | 부산희망리본 사회적협동조합                 | 051-714-5147   | 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 |
| 부산고용센터   | (사)부산여성의전화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       | 051-807-7904   | 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 |
| 부산고용센터   | (사)부산경영자총협회                    | 051-647-5530   | 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 |
| 부산동부고용센터 | (주)잡스토리 수영구지점                  | 070-4447-6882  | 부산 동래구, 금정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            |
| 부산동부고용센터 | (주)커리어다움                       | 051-582-8633   | 부산 동래구, 금정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            |
| 부산동부고용센터 | (주)스마트소셜                       | 051-717-2686   | 부산 동래구, 금정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            |
| 부산동부고용센터 | (사)부산경영자총협회 동부산지소              | 051-741-1134   | 부산 동래구, 금정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            |
| 부산북부고용센터 | 인지어스(유) 부산북부지사                 | 051-921-2280~2 | 부산 북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북부고용센터 | (주)두원잡                         | 051-327-3345   | 부산 북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북부고용센터 | (주)빛슬인재개발원                     | 051-365-1915   | 부산 북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북부고용센터 | (사)부산경영자총협회 서부산지소              | 051-328-9194   | 부산 북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창원고용센터   | 창원상공회의소                        | 055-210-3093   | 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                     |
| 창원고용센터   |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경남지회 (이노비즈협회경남지회) | 055-295-2360   | 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                     |

| 관할고용센터명  | 운영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| 관할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창원고용센터   | (사)경남경영자총협회       | 055-263-0283      | 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창원고용센터   | (주)제이엠커리어창원지사     | 055-261-3264      | 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울산고용센터   | (주)좋은일자리          | 052-263-3500      | 울산  |
| 울산고용센터   | (주)아이앤제이 커리어컨설팅센터 | 052-222-9411      | 울산  |
| 울산고용센터   | 퍼스트인잡(주) 울산사무소    | 052-708-2488      | 울산  |
| 울산고용센터   | (주)위더스            | 052-222-1272      | 울산  |
| 김해고용센터   | 인지어스(유) 김해지사      | 055-904-3559/3560 | 김해시, 밀양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김해고용센터   | (주)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  | 055-723-2042      | 김해시, 밀양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김해고용센터   | (주)케이엔잡 김해지사      | 055-312-3574      | 김해시, 밀양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양산고용센터   | (주)두원잡 양산사무소      | 055-785-0110      | 양산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진주고용센터   | 진주상공회의소           | 055-753-0413      |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하동군, 남해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    |
| 진주고용센터   | (주)제이엠커리어 진주지사    | 055-794-1015      |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하동군, 남해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    |
| 통영고용센터   | (사)한국커리어 경남지사     | 055-990-8829      | 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구고용센터   | (주)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    | 053-710-1263      | 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       |
| 대구고용센터   | (주)커리어스타          | 053-384-8840      | 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       |
| 대구고용센터   | (재)대구직업전문학교       | 053-350-1000      | 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       |
| 대구고용센터   | (주)브레인폴           | 053-627-3400      | 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       |
| 대구고용센터   | 경산상공회의소           | 053-811-3031      | 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       |
| 대구서부고용센터 | (주)지에스씨넷 대구지점     | 053-525-1470      | 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 |
| 대구서부고용센터 | 칠곡상공회의소           | 054-974-0850      | 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 |
| 대구서부고용센터 | (주)커리어스타 달서점      | 053-628-8841      | 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 |
| 대구서부고용센터 | (주)코잡 대구서부지점      | 053-716-6677      | 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 |

| 관할고용센터명  |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| 관할지역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대구서부고용센터 |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<br>대구경북지회    | 053-745-4703    | 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<br>고령군, 성주군,<br>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             |
| 포항고용센터   | (주)지에스씨넷 포항지점              | 054-285-1949    | 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<br>울진군, 울릉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포항고용센터   | 인지어스(주) 포항남구지사             | 054-614-0462    | 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<br>울진군, 울릉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미고용센터   | (사)경북경영자총협회                | 054-461-5522    | 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(석적3공단)  |
| 구미고용센터   | (주)지에스씨넷 구미지점              | 054-456-1470    | 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(석적3공단)  |
| 영주고용센터   | (주)지에스씨넷 영주지점              | 054-631-1470    | 영주시, 문경시, 상주시,<br>봉화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동고용센터   | (주)지에스씨넷 안동지점              | 054-854-1470    | 안동시, 예천군, 의성군,<br>청송군, 영양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주고용센터   |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              | 064-756-5425    | 제주도   |
| 광주고용센터   | 이노비즈(중소기업기술혁신)협회<br>광주전남지회 | 062-363-1333, 0 | 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<br>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<br>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<br>제주도 |
| 광주고용센터   | (사)지역고용정책연구원               | 062-652-2070    | 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<br>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<br>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<br>제주도 |
| 광주고용센터   | (사)광주경영자총협회                | 062-716-3424    | 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<br>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<br>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<br>제주도 |
| 광주고용센터   | 전남경영자총협회 나주시부              | 061-725-7040    | 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<br>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<br>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<br>제주도 |
| 광주고용센터   | 국제커리어센터                    | 062-464-5411    | 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<br>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<br>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<br>제주도 |
| 광주고용센터   | 인지어스(유) 광주지사               | 062-454-8031    | 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<br>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<br>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<br>제주도 |
| 광주고용센터   | 내일엔 광주                     | 062-716-2841    | 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<br>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<br>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<br>제주도 |
| 광주고용센터   | (주)스카우트 광주지사               | 062-514-6477    | 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<br>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<br>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<br>제주도 |
| 전주고용센터   | (사)전북경영자총협회                | 063-282-3393    |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<br>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<br>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           |

| 관할고용센터명 |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관할지역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전주고용센터  | (사)이엘티에스연구원 전주지사   | 063-251-8083  |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 |
| 전주고용센터  | (주)베스트인 전북지사       | 063-715-3596  |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 |
| 전주고용센터  | (주)제이비커리어          | 063-237-4135  |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 |
| 전주고용센터  |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| 063-213-2356  |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 |
| 전주고용센터  | 전주상공회의소            | 063-280-1150  |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 |
| 익산고용센터  | (유)드림워크            | 063-835-5337  | 익산시, 김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익산고용센터  | 인지어스(유) 익산지사       | 063-918-2156  | 익산시, 김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군산고용센터  | (주)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     | 063-451-7521  |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군산고용센터  | 군산국제커리어센터          | 063-464-9670  |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목포고용센터  | 중앙잡커리어             | 061-800-6606  |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, 진도군, 강진군, 완도군, 장흥군, 해남군 |
| 목포고용센터  | 목포상공회의소            | 061-242-8581  |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, 진도군, 강진군, 완도군, 장흥군, 해남군 |
| 목포고용센터  | 목포국제커리어센터          | 061-281-7114  |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, 진도군, 강진군, 완도군, 장흥군, 해남군 |
| 순천고용센터  | 전남경영자총협회           | 061-741-8114  | 순천시, 보성군, 고흥군, 여수시, 광양시                     |
| 순천고용센터  | 여수상공회의소            | 061-641-4006  | 순천시, 보성군, 고흥군, 여수시, 광양시                     |
| 순천고용센터  | 광양상공회의소            | 061-793-0012  | 순천시, 보성군, 고흥군, 여수시, 광양시                     |
| 대전고용센터  | (사)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   | 043-368-9716  | 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                   |
| 대전고용센터  | (사)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     | 042-256-7051  | 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                   |
| 대전고용센터  |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  | 042-861-2200  | 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                   |
| 대전고용센터  | (주)제이엠커리어 대전지사     | 042-223-0135  | 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                   |
| 대전고용센터  | (주)한국커리어잡스 대전지사    | 070-4411-1411 | 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                   |
| 대전고용센터  | (주)스카우트 대전지사       | 042-822-2410  | 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                   |

| 관할고용센터명 |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관할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세종고용센터  | (사)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              | 044-905-1614 | 세종시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                |
| 세종고용센터  | (주)지에스씨넷                    | 044-864-1490 | 세종시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                |
| 청주고용센터  | (사)충북경영자총협회                 | 043-221-1390 | 청주시, 옥천군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영동군 |
| 청주고용센터  | (주)지에스씨넷 청주지점               | 043-264-1951 | 청주시, 옥천군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영동군 |
| 청주고용센터  |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        | 043-235-2884 | 청주시, 옥천군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영동군 |
| 청주고용센터  | (사)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             | 043-714-3042 | 청주시, 옥천군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영동군 |
| 천안고용센터  | (주)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              | 041-522-7980 |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                |
| 천안고용센터  | (주)한국커리어잡스                  | 041-556-2829 |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                |
| 천안고용센터  | 인지어스(유) 천안지사                | 041-903-0351 |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                |
| 천안고용센터  |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 | 041-563-1194 |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                |
| 천안고용센터  | 충남북부상공회의소                   | 041-559-5763 |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                |
| 충주고용센터  | 충주상공회의소                     | 043-843-7004 | 충주시, 음성군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주고용센터  | (주)제이비커리어                   | 043-857-8219 | 충주시, 음성군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천고용센터  | 제천단양상공회의소                   | 043-642-3114 |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                     |
| 보령고용센터  | (주)지이라인                     | 041-933-9655 | 보령시, 홍성군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           |
| 서산고용센터  | 서산상공회의소                     | 041-663-3063 | 서산시, 태안군                          |